

< 수시 공시 >

2014.12.17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 : 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

2. 공시 내용 :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253 조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'14.9 월말 순자산액이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최저순자산액(10 억원)에 미달한 해당 투자회사에 대하여 '14.12.30.자로 등록을 취소함을 공시함.

참고로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25 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.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202 조에 따라 등록취소일('14.12.30)현재 각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선임함.

3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 공시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